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36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신동근·김철민·박상혁

김윤덕 • 유정주 • 이규민

이상헌 • 이수진 • 이정문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 관계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 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기관 또는 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종사자"라 한다)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③ (생 략)	방지대책) ① ~ ③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보
	안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
	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
	관 또는 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공
	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종사자"라 한다)
	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정보 보
<u><신 설></u>	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
	주택사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u>라야 한다.</u>
<u> <신 설></u>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신 설>

 마른 실태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 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